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비자생활협동조합(이하 “생협”)의 정관변경 인가 및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에 대한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, 보건·의료생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
- 1)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재하였음. 이에 따라 생협이 정관변경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조합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였음.
- 2)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이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처리기한을 규정하고, 인가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.
- 3) 정관변경 인가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생협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.

나.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(안 제17조 제2항)

- 1)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이므로 설립인가에 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(20일)이 연합회(30일)보다 더 짧게 설정되어 있어,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.
- 2)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「협동조합기본법」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등의 입법례에 따라 60일로 조정.
- 3) 처리기한 현실화로 설립요건 충족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해져 전국연합회의 건전한 설립·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.

다. 보건·의료생협 관리·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(안 제17조의2)

- 1) 보건·의료생협에 대한 관리·감독 업무는 시·도지사가 관할하고 있으나, 시·도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·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.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난립, 친인척 위주의 임원 구성, 차입금 한도 위반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·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으며, 의료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음. 시·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건보공단”)에 보건·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,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인 관리·감독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음. 이에 감사원은 보건·의료생협 관리·감독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한 바 있으며('22.5.), 「경제규제개선 TF」 ‘보건의료작업반’에서도 보건

·의료생협 관리·감독 규정 정비를 1차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바 있음.

- 2)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단순 서류확인업무로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의료기관 관리·감독에 전문성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·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- 3) 보건·의료생협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으로 보건·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보건·의료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. 아울러, 사무장병원 진입차단 및 퇴출을 통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1. ~ 9. 9.)

3) 행정규제 :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제8조의3부터 제8조의7까지로 하고,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제17조제2항 후단 중 ““제17조제1항”으로”를 ““제17조제1항”으로, “20일”은 “60일””로 한다.

제17조의2 중 “업무(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에 한정한다)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</u> 시·도지사는 <u>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10일 이내</u>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가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<u>제8조의2 ~ 제8조의6</u> (생략)	<u>제8조의3 ~ 제8조의7</u> (현행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와 같음)
제17조(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) ① (생략)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6조제1항”은 “<u>제17조제1항</u>”으로 본다.	제17조(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“제17조제1항”으로, “20일”은 “60일”----- -----.
제17조의2(업무의 위탁) 시·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·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<u>업무(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조하</u>	제17조의2(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업무----- -----

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에 한정한다)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407